

특허권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유동화 방안



김덕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남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특허권 투자회사의 목적

특허권 투자회사는 유망한 특허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성은 최초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 자본금을 바탕으로 설립한다. 특허권 투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내에서 하나의 사업부로 운영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자산수탁자와 자산유동화회사 신용평가회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특허권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술평가 및 지원부서, 경영지원부서, 금융지원부서, 특허 업무 지원 부서가 있다.

특허권 투자회사의 구성

기술평가 및 지원부서

기술평가란 평가대상기술에 관련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분석을 통해 기술의 가치(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¹⁾ 평가과정을 통해 기술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성까지 추정할 수 있다. 기

1) Gordon V. Smith & Russel L Parr, 1994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 및 기술컨설팅 전문기관 육성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1999, p163

술평가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기관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독립기관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³⁾

구분	금융기관	보증기관	독립기관
장점	기술평가 및 대출절차의 일원화로 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	기술에 대한 평가관련 부분적 경험보유 보증과 직접 연계가능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가능 연계, 파급효과 창출
단점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부족 각 금융기관별 독자적 전문인력보유 필요성 등 총비용 증가	보증과의 미연계시 기업의 이용률 저조 금융기관이 보증의존 타성이 생기면 자율적 성장기반 제약	금융기관과 기술평가 기간과의 기능 이원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및 활용수단 등의 한계

미국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결과의 민간 이전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제도의 정착은 물론,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의 기술평가도 상당히 정착되어 벤처캐피탈의 자금조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관이나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³⁾ 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서 개별법의 사업목적에 따라 약 100여개 정도의 기술평가 및 거래기관을 지정하여 중복 운영해 오기 때문에 기술평가가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가 공신력을 얻지 못해 기술금융지원, 기술보증의 부실을 낳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우수한 기술평가를 받

는다고 할지라도 그 평가결과가 기술이전, 사업화자금, 기술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현재 기술평가기관과 기술 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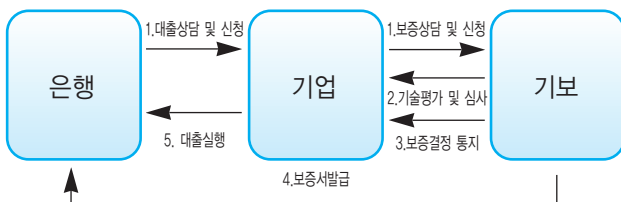
이는 위의 그림과 같이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기능이 일원화 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 내에 기술평가는 물론 금융지원, 특허업무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두 가지 기능 중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과 차별화를 보인다. 이는 기술평가가 실제 금융지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 평가 기관이 100여 개에 다다른다고 하였는데, 기술이 다양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평가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한 평가 기관에서 모든 기술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특허권 투자회사는 이러한 기술 평가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평가 및 지원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술평가 및 지원부서는 최초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기업의 특허권이 실시중인지, 또는 실시 가능하며 실시를 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허권 유통화 증권이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발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가 되고 있지 않다면 기술평가가 이후 실시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 업무 지원 부서와 함께 사업성 있는 유망한 특허권을 찾아 특허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지원 부서

경영지원부서는 기술이 시장에서 수익성이 있는지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기업



3) 송진홍, <기술 평가 시장의 현황 및 국내 외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비교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 2005, pp12~13

4) 정성찬 외, <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산업재산권 19호, 2006, pp168~172

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을 해준다. 뒤에 나오는 우리은행에서 유망한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며, 경영적인 컨설팅을 해준 사례가 있다. 기술력이 좋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유망한 기술을 널리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자체 내에서 이러한 인력을 갖추기 어렵고,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허권 투자회사 내에서 이러한 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삼영테크놀로지의 메탈패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레이저 폰이 슬립한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와 맞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이 지난해 9월에 발족하여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운영중이다. 컨설팅 신청을 받는데 34개 업체가 지원하는데 120개 업체가 신청했고, 올 상반기에도 56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컨설팅 사업에 170개 업체가 신청했다. 경기도 소개 중소기업체인 A사는 얼마 전 한 외국 업체 측으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는데,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지원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지식재산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고, 전통적인 유형자산보다는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이 기업 생존은 물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⁵⁾ 경영지원 부서는 기업의 늘어가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벅차보인다. 특허권 투자회사의 경영지원 부서는 특허권을 유동화와 관련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원부서

특허권 투자회사도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실사가 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

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금융 지원 부서는 특허권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앞서 CJ투자신탁의 특허권 소송지원 펀드와 마찬가지로 유망한 특허권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지원 부서는 특허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을 검토하고, 투자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향후 특허권이 실시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을 검토하여야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실사가 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일반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산 유동화 업무 뿐 아니라 투자업무와 금융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회사보다 그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허 업무 지원부서

특허업무지원 부서는 특허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이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실시이전에 침해 여부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청구 사항이나 범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비만 대략 300만~2000만 원 수준이며 해외 취득 역시 건당 2000만 원이다. 만약 특허가 10건이라고 치면, 1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이정도 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녹록한 비용이 아니다. 더군다나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 특허 담당자만 300~400명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 특허 담당자가 많아야 두, 세 명이다.⁶⁾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 사전에 특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일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개발 후 발견된 선행특허로 인해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화 검토를 중단했다는 기업이 각각 53.1%, 14.6%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특허권 투자회사의 특허 업무 지원부서는 기업의 특허 관련 업무에 대해 지

5) <중소 지식재산 지키고 키우고>, 매일경제, 2007년, 8월 22일자

원해주고, 이에 관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평가 및 지원부서와 함께 유망한 특허권을 발굴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소결

기술평가 및 보증이후, 금융기관이 결국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금융기관은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술 평가 및 투자의사 결정을 한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유망한 특허권이 실사가 되어 실제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특허권 투자회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실시 이후 지분 증권, 채무 증권을 통해 수익을 올리어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유형자산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는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허권 투자회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의 운용 방안 예시

특허권 투자회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가 있다. 다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세부적인 운용방식을 논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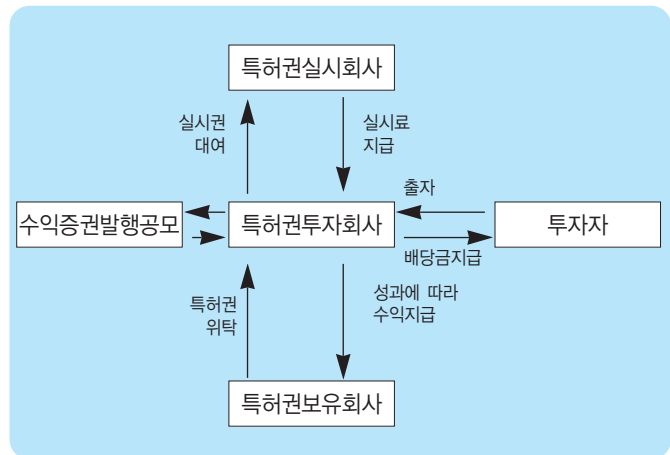
유동화 전문회사형

첫 번째 유형은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로열티 수익을 공모를 통해 양도한다는 점에서 유동화 전문회사형과 유사하다.

특허 투자회사가 특허권의 거래를 유도하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특허 투자회사는 특허권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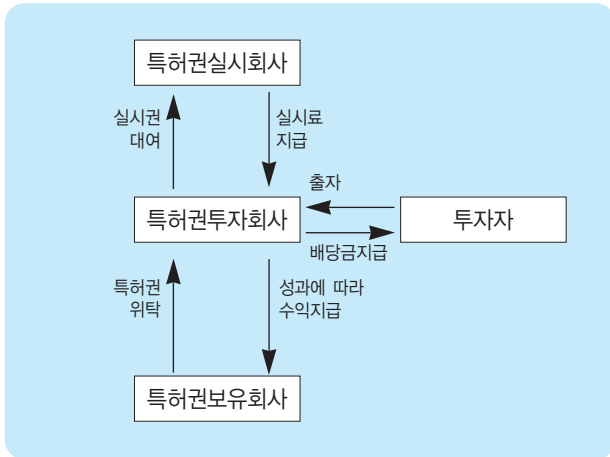
유한 회사로부터 특허권의 평가와 사업성을 의뢰받는다. 뿐만 아니라 특허 투자회사가 유망한 휴면특허를 발굴하여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허 투자회사는 각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수요, 공급을 파악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개가 일어났을 때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은 정액일 수도 있고 지급받는 실시료 수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방식일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특허권을 대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특허 투자회사가 가진 정보력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특허권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유동화전문회사형과 같이 특허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을 바탕으로 하여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면, 특허권 보유회사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회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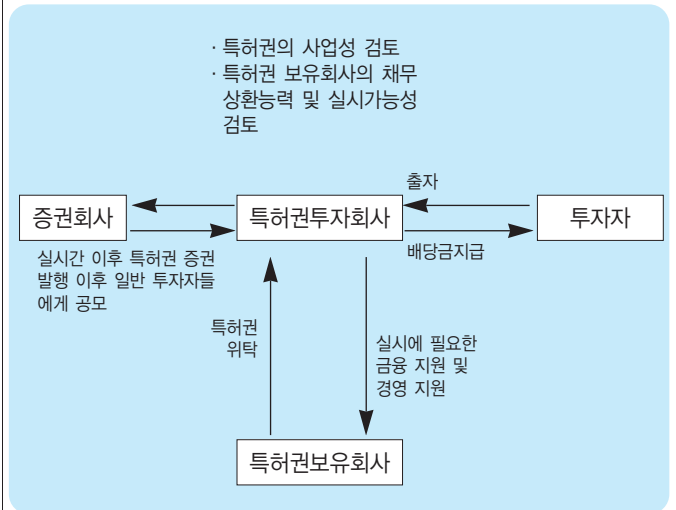
이 방식은 위탁 받은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화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탁회사형과 유사하다. 특허권은 기술범위가 다양하고 또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설비



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선박이나 부동산 등 다른 유형자산을 관리하듯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춘 위탁자(특허권보유회사)가 직접 실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앞서 중소기업의 특허실시과정에서 어려움을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특허권 보유회사가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사업자금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특허권 보유회사)가 특허권에 투자하는 회사(이하 특허권 투자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특허권 보유회사는 해당 특허를 실시하고 싶으나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 투자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술평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특허권 보유회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앞으로의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자금을 대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보유회사가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적, 법률적, 경영적 지원을 하여 실시 이후 수익이 발생할 있게 하는 것이 특허권 투자회사의 역할이다. 이후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공모를 하여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특허권이 선박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실시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만 상장을 하여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한다. 상장되었을 경우 조달된 자금을 통해 최초 특허권 투자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로써 특허

권 투자회사는 수익을 얻고, 이를 특허권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형태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이 판매 성공 여부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즉 지급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지급 보장이 불분명 특허권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에 획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 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형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을 크게 지분증권(이하 특허주식)과 채무증권(이하 특허채권)으로 나눈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특허권은 실시기간 동안에 수익이 창출되고, 실시기간이 끝나면 선박이나 부동산처럼 청산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형태로 발행하며 향후 실시기간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청산과 같

은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지분 증권으로서의 형태

특허주식은 지분증권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지분형태의 발행은 실시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등 지급받을 것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 지분증권 중 특허주식은 우선주의 성격을 띤다. 우선주 중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우선주의 성격을 띤게 되어 실시가 끝나게 되면, 또는 실시 중에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실시권의 기간이 끝나면 그 가치를 잃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특허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특허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고 미래의 현금흐름에 따라 특허주식의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한다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향상될 것이고 이는 향후 전환할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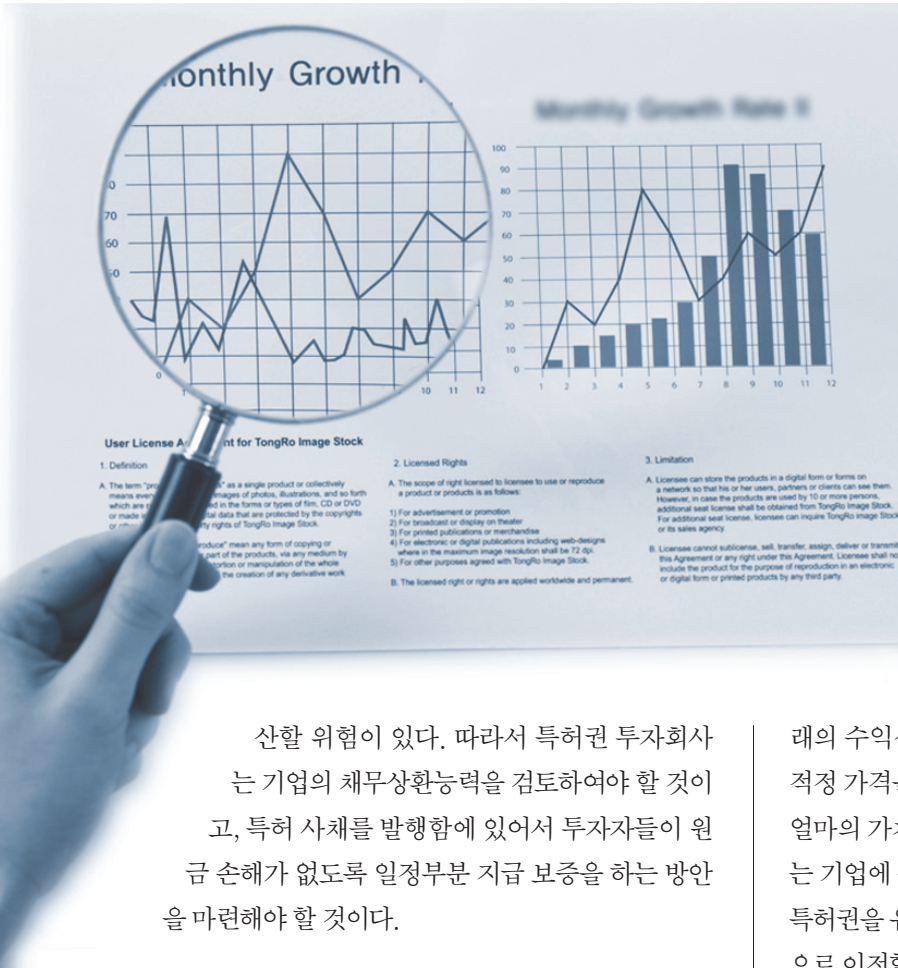
투자자들은 특허권이 실시가 된 이후 창출되는 수익과 앞으로의 기업성장률과 실시중인 기술의 파급가능성을 바탕으로 특허주식을 매입한다. 최초 계약에 따라 실시료의 수익에 따라서 차등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시 성과가 삼성테크놀로지와 같은 사례⁷⁾나 각주의 뉴디스⁸⁾의 사례에서처럼 매우 좋다면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 형태로 발행함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것이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남은 물론 배당수익이외에 시세 차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증권으로서의 형태

특허채권은 채무증권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채무증권 중 특허채권은 전환사채의 성격을 띤다. 전환사채는 최초 채권의 형태로 발행하지만, 일정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특허채권은 특허주식과 전제적인 운용방식이 유사하지만 향후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최초 투자한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어 특허권이 가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해당 특허권을 실시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래 6%의 이율을 약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이율만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이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허권을 실시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따라 다른 이율을 지급하면 된다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 것이다. 기업이 고정적인 이율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성과에 따라서 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통한 이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만원 상당의 특허채권을 취득했다고 하자. 실시 성과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이자를 매기 말에 지급한다. 이후 특허권의 실시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상환 받고 끝나는 경우는 일반 사채와 같을 것이다. 전환사채의 형태로 특허사채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특허권을 실시한 회사의 지분증권으로 특허채권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특허채권보다는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의 실시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향후 취득하는 특허권 실시회사의 지분증권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는 특허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채무 지급능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채무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채권의 발행은 만기시 기업이 도

7) 삼성테크놀로지의 메탈패드 기술을 모토로라에서 실시한 이후 삼성의 매출액은 2004년 134억에서 2005년 1300억대까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8) 뉴디스는 LCD모듈 및 광학필름 전문업체로 LS전선으로부터 휴면특허 18건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이 회사 오수영 사장은 사업의 원년인 내년에 100억 매출로 시작해 2009년 500억, 2010년 1200억, 2011년 2300억의 고속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LS전선은 미활용 특허를 이전함으로써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술을 이전하는 회사나 이전받는 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한다., <잠자는 특허를 깨워라>, 디지털타임즈, 2007년 6월 19일자



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금 손해가 없도록 일정부분 지급 보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허투자 회사가 가져올 효과

유망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지원받기 어려움. 실제적으로 은행이 특허기술을 보고 사업성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특허권 투자회사는 이러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망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여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의 시장가격 형성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 방식을 예로 들어보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낸다. 하지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치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주식가치의 합은 그 기업의 가치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POSCO의 주가가 40만 원이고, 총 발행주식수가 100만 주라면 기업의 가치는 4천억 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며 일정한 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장

래의 수익성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각기 다른 적정 가격을 산출해낼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해당 특허권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느냐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서는 특허권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장부가액보다 시장가격이 크기 때문에, 실시되는 특허권이 유동화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기업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휴먼특허를 사용가능한 업체로 이전하는 데 동기를 제공할 것이고, 특허권의 기부활성화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대차대조표에 실시중인 특허권을 시장가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인터넷 관련 회사나 게임관련 회사, 전자 부품 제조 회사 등과 같은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 때문에 관련 기술에 관하여 많은 특허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적 접근방법에 의한

9) 김덕산 외, 앞의 논문, p27

자산평가와 회계처리의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상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한다면, 이들 기업은 전보다 좀 더 좋은 신용 등급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들이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 조달 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질 것이며, 대출 금리 또한 낮게 책정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시 말해 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며, 이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도록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⁹⁾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¹⁰⁾

특허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허권에 대한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허 투자회사는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잘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특허권을 발굴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테크놀로지사의 메탈패드가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삼성과 LG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국을 시장조사차 방문한 모토로라에 극적으로 발견되어 레이저 폰에 사용된 사례는 정보력 있는 특허권 투자회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면 수익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수한 기술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기업들이 특허 사업화의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요인은 사업화 자금 부족(53%)이었다. 그 다음으로 마케팅 및 영업능력 부족(20%)이 지적되었으며, 위조 및 모방상품(9%), 기술 및 연구인력 부족(9%), 과도한 심사처리기간(9%)등의 순으로 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지적되었다.¹¹⁾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공기청정기업체 에어비타는 전기분해 기술을 이용한 공기정화 장치 발명으로 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제품은 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음이온이 발생해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기존 공기청정기와 달리 필터의 교환이 필요없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전기가 100원에 불과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극도로 나빠져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산업용 축전지 제조업체 에너그린 또한 친환경 대용량 니켈수소축전지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0년부터 3년간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여왔기에 매출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요구하지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에서 앞서 언급한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보고 신용대출을 해주며 마케팅적인 자문도 하였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금융권에서도 특허기술이 리스크는 크지만 또한 수익성도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특허권 투자회사의 성공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반면 특허권 투자회사는 전문 인력 보유 면에서 은행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실시중인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시가능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전문성을 갖출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업간의 특허권의 거래는 물론 특허권 실시 이후 공모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영역이 훨씬 넓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 이외에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을 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허권 투자회사가 직접적으로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법률전문 인력을 동원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후 상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특허권 투자회사가 철저하게 기술력과 사업가능성을 검토함을 전제로 한다. 향후 실시가 일어나고 특허 지분증권, 채무증권을 상장하여 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0) 성태경, <우리나라 특허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5, p32

11) 성태경, 앞의 논문, p109

규모의 경제 실현

앞서 자산 유동화의 어려움 중 하나로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들었다.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 자산에 따라서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초기에서의 사업성조사, 법률자문, 회계감사, 신용평가 및 증권발행, 신용보완 등에 드는 초기 착수비용이 높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동질적으로 건설할 수록 그에 드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¹²⁾ 특허권 투자회사의 설립은 우수한 특허권에 대한 투자과정과 이를 유동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 투자회사 내에 금융인력, 기술인력, 법률인력, 경영인력 등이 있고, 하나의 특허권뿐 아니라 여러 개의 특허권에 투자를 하고, 또한 이러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에 투자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데 이러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이전에 발생하는 위험 감소

선박이나 부동산은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기가 어렵지 않고,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선박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 특허권은 실시를 하여야 수익이 발생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현재 사모 형태로 우수한 특허기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공모의 형태로 일반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무형 자산인 특허권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공모이전에 특허권이 가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허기술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성공 여부를 전문 인력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투자회사는 기업이 특허권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향후 실시가 되어 매출이 발생할 때,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

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인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특허권 투자회사 설립형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기관으로 설립, 운영하여 시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민간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투자회사가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 산하 기관

정부는 1968년 11월 '자본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은 기업공개와 주식의 분산, 일반인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자본 조달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첫 조치로 1968년 12월 유가증권 인수 및 기업공개를 주 업무로 하는 '한국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우량기업의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안정과 같은 시장조절 기능까지 맡았다.¹³⁾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현재 특허청에서 기업에 경영지원을 하는 조직을 확대 재 편성하여 특허청 초기 일정 정도의 자금을 출자하여 가칭 '한국지적재산관리공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대거 배치하여야 할 것이고, ETRI나 KTTC와 같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관리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특수목적기구의 기능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의 기능, 신용평가와 신용보강기능, 신탁관리기능 등 최대한 모든 기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공사의 목적은 과거 '한국투자개발공사'가 그랬던 것처럼 초기 기술거래시장을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 하며, 이후 민간금융기업들이 진입하여 자생적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체 하는 과도기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12) 김기웅, 오준석, <자산유동화증권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논총] 6집, 한국항공대학교, 2001, p82

13) 장진모, <주식의 역사>, 한국경제신문, 2004, pp49-59

금융회사와 기술평가회사 컨설팅회사와의 연계

물론 처음부터 민간에 바로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도 선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만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따라서 민간금융회사들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업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제만 정비해 주면 될 것이다. CJ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 소송 관련 펀드인 'CJ베리타스 지적재산권펀드'는 이제 민간금융회사들이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화이다. 빠르게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이 때, 특허권 투자회사의 설립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 어떤 종류의 금융회사에서도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굳이 위의 서술한 모든 기능을 한 회사 안에 다 통합할 필요 없이 기술평가 컨설팅회사와 연계하여 시장자체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도 있다. 다만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방식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결론

하나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석유, 광물, 목재 등의 원자재나 중고차 시장같이 실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자연 발생적인 경우면 모르나, 특허권과 같이 무형의 자산이면서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재산권이 정의되는 독특한 경우는 많은 이론적 근거와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특허에 관한 법률들이 될 것이다. 아무리 금융 상품이 정교한 거래 모형을 갖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그 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에 시작되었던 자산유동화나 선물, 옵션 등의 시장

도 법을 세우고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권 투자 시장이 활성화의 최종 마침표는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지적재산권법에도 현실적 인식을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중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를 들어 보면 균등침해의 확대 인정 및 제도 개선,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의 활용, 소송비용의 지원 특허관련 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집중 및 소송 진행 기간의 단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는 법제를 재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권은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실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특허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만큼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실시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를 통해서 요건을 갖춘 특허권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할 필요성도 분명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그 발행금액은 기업이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해야 한다. 과거 벤처 붐이 일어난 시절, 또한 미국에서는 'tec' 라는 이름이 들 어간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거품이 일어난 시절이 있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하는 투자는 거품을 유발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허권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기술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바탕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실시중인 특허권만을 그 투자대상으로 하고, 향후 실시되었을 경우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지 모르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허권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면 기술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